■ 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29-369.
http://doi.org/10.17948/kcs.2023..100.329

『喪禮備要』의 판본에 관한 고찰*

장동우(張東宇)**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돈암서원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3. 함경감영본・평안감영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4. 경상감영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상례비요』는 행례의 측면에서 17세 전반까지의 연구를 총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행례서의 연구를 선도한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상례비요』는 『가례』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古禮와 朱子의 定論 그리고 『가례』의 내적 정합성을 근거로 『가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조선의 시속을 반영하여 『가례』를 현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조오례의』의 민간의례 관련 규정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저술이고, 이후 간행되는 행례서들은 『상례비요』를 典範으로 그 범위를 관례와 혼례로까지 확대하고 내용적으로 정련화하는 작업을 예외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상례비요』의 이러한 성취는 장기간에 걸친 전국적인 보급과 확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지만, 이에 관한 전문적 연구는 1편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8종 이외에 10종을 추가한 18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문헌기록과 본문의 변화 그리고 부가된 두주의 내용을 근거로 간행연도를 추정하는 동시에, 간행지를 기준으로 각 계통 이본의 체재상・내용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양상을 좀 더 실재에 가깝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409)
**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분석의 결과, 무자서원개간본이 간행된 1648년 이후 17세기 말까지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등에서 최소 9차례 중간이 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18~19세기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지며 20세기에는 충청도가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세기 이후의 양상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간행된 이본을 찾는 작업을 통해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상례비요, 돈암서원본 계통, 평안감영본 계통, 함경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

1. 들어가는 말

『家禮』는 늦어도 14세기 초에는 東傳된다. 『가례』가 도입되고 한 세기 반이 지나 『高麗史·禮志』(1451)와 『世宗實錄·五禮』(1454)를 기본으로 『國朝五禮儀』(1474)가 완성된다. 『국조오례의』의 성립은 國家典禮에서부터 私家禮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공인된, 그리고 『가례』를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한 행례의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1] 『국조오례의』 성립 이후 한 세기가 지나 16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가례』 연구는 喪禮와 祭禮를 중심으로 行禮의 표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상례비요』는 행례의 측면에서 17세 전반까지의 연구를 총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行禮書의 연구를 선도한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상례와 제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례비요』는 『가례』의 강목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古禮와 朱子의 定論 그리고 『가례』의 내적 정합성을 근거로 『가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조선의 시속을 반영하여 『가례』를 현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조오례의』의 「大夫士庶人喪」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저술이고, 이후 간행되는 행례서들은 『상례비요』를 典範으로 그 범위를 관례와 혼례로까지 확대하고 내용적으로 정련화하는 작업을 예외 없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2]

『상례비요』의 이러한 위상은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보급과 확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지만, 『상례비요』가 기호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

1) 장동우,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114면.
2) 장동우,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동양철학』 34, 한국동양철학회, 2010 참조.

되는 실상을 판본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는 고작 1종에 불과하다.[3] 해당 연구는 각종 서지목록과 해제서에 수록된 판본, 각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반으로, 乙丑(1685)년 遯巖書院本, 1744년 嶺營本, 1782년 嶺營本, 18세기 成川府本, 1812년 嶺營本, 1848년 嶺營本, 己巳년 咸營本, 1913년 在田堂書鋪本 등 8종의 이본이 순차적으로 간행되었음과 각각의 판본이 가지고 있는 서지적 특징을 본석하였다. 아울러 판본의 계통을 행자수를 기준으로 '10행23자 계열', '9행21자 계열', '10행18자 계열', '8행21자 계열'로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4] 다만 형태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간행연도를 추정함에 부정확함이 노정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본의 종수가 많지 않아 전국적인 보급과 확산의 양상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8종 이외에 10종을 추가한 더하여 총 18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문헌기록과 본문의 출입 그리고 부가된 두주의 변화를 근거로 간행연도를 추정하는 한편, 간행지를 기준으로 각 계통 이본의 체재상・내용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상례비요』의 텍스트가 안정화되는 과정과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양상을 좀 더 실재에 가깝게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자수가 아닌 간행지를 중심으로 돈암서원본 계통, 함경감영본 계통, 평안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찾아낸 초간본(3종)[5]은 간행지는 물론 체재도 차이가 있지만 戊子書院 開刊본의 母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돈암서원본 계통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2. 돈암서원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遯巖書院本 계통은 10行23字, 不分卷1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現傳本으로는 5종의 異本이 확인된다. 初刊본은 10행22자이기는 하지만 돈암서원본 계통의

3) 金香淑, 『畿湖士林 禮書의 書誌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4) 김향숙, 앞의 글, 138면.
5) 공교롭게도 초간본 3종은 '초간본계통'으로 묶여야 하는 3종의 이본이다. 본고에서도 초간본의 중간이 신미(1631)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한 계통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는 초간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母本에 해당하므로 함께 다루고자 한다.

〈표 1〉 돈암서원본 계통 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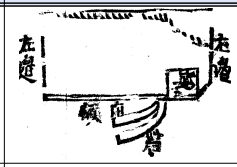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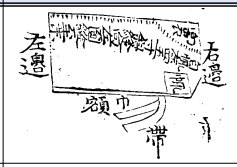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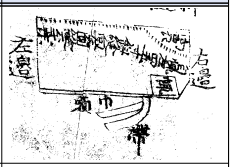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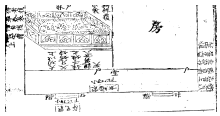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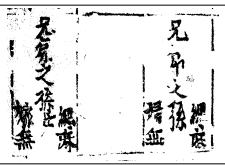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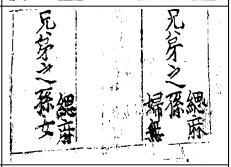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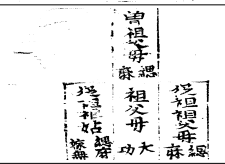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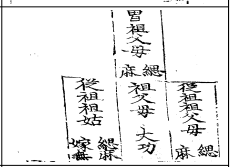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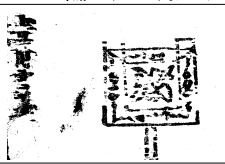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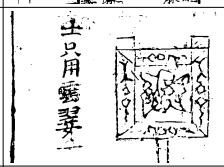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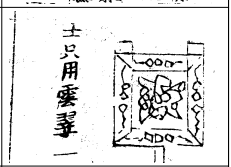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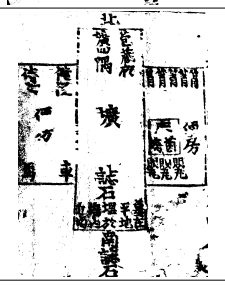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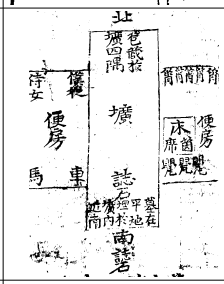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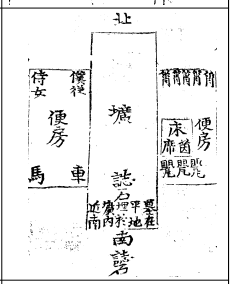
番號	刊本名	版種	構成	行字數	刊行地	所藏處	刊年
❶	(初刊)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2자		Ⓐ국립중앙도서관(古5213-180), Ⓑ충남대(고서구봉 經.禮類 729), Ⓒ경희대(古392.2신67ㅅㄷ)	Ⓐ1621년, Ⓑ1631년, Ⓒ1632-1647년 으로 추정
❷	[連山縣 開刊]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3자	連山 縣	경기대(k10568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651년으로 추정
❸	[四史庫]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3자		장서각(k1-116), 규장각(奎1258, 奎11502, 奎11679)	1652-1665년 으로 추정
❹	乙酉書院 重刊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3자	遯巖 書院	계명대((고) 180.42 신의경ㄷ) 외 다수	1705년 또는 1765년
❺	乙丑 遯巖書院 重刊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3자	遯巖 書院	규장각(가람古393-Si61s) 외 다수	1865년 또는 1925년으로 추정
❻	乙亥 濟州鄕校 開刊본	목판본	不分卷 1冊	10행 23자	濟州 鄕校	원각사성보박물관	1695년

❶(초간본)은 모두 3종이다.[6] Ⓐ(국중본)는 序, 凡例, 跋 및 圖의 앞부분 1.5張과 本文의 마지막 부분인 '墓祭'의 뒷부분에 1張이 결락되어 있고 Ⓑ(충남대본)은 跋만이 결락되었으며 Ⓒ(경희대본)은 일부 구멍이 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온전하게 보존된 간본이다. Ⓒ(경희대본)을 통해 보면, 초간본은 喪禮備要序, 喪禮備要凡例, 喪禮備要圖, 本文, 喪禮備要跋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성암고서박물관에도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간본(청구기호: 성암1-127)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2013년 박물관이 폐관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형태사항이 70張,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충남대본) 또는 Ⓒ(경희대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圖에 보이는 3종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초간본 3종 비교

圖名	Ⓐ(국중본)	Ⓑ(충남대본)	Ⓒ(경희대본)
①「幅巾圖」			
②「疾病遷居正寢, 初終及復, 男女哭擗圖」			
③「出嫁女爲本宗降服圖」			
④「爲人後者爲本宗降服圖」			
⑤「雲翣圖」			
⑥「藏明器·下帳·苞·筲·甕·誌石圖」			
형태사항	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3.0×17.5 cm, 有界, 10行 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7]; 33.3x22.2cm	1冊: 插圖, 四周雙邊[8], 半郭 24.8x18cm, 有界, 半葉 10行 22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0.5x20.8cm.	1冊 1函: 插圖, 四周雙邊 半郭 24.7x17.9cm, 有界, 10行 22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3.2x23.0cm.

①『가례』에는「深衣冠履之圖」가운데『상례비요』의 '裹頭垂帶圖'에 해당하는 그림이 실려 있고『가례의절』에는「幅巾圖」가 수록되어 있다. 복건을 재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두 책 모두 싣고 있지 않지만,『상례비요』에는 복건의 구성 요소인 깃(幅)과 띠를 재단하는 방법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①은『상례비요』의「복건도」가운데 '斜縫向左綴帶圖'이다. Ⓐ(국중본)에는 '깃(幅)의 왼쪽에서 4~5치 되는 곳으로부터 비스듬히 꿰매되 왼쪽을 향하여 둥글게 꿰매나가다 끝에 이르러서는 안쪽을 향하게 한다(自幅左四五寸斜縫, 向左圓縫, 至末向裏)'는 설명이 없다. Ⓑ(충남대본)과 Ⓒ(경희대본)은 이를 보완한 것이고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모두 보완되어 있다.

②『가례』와『가례의절』에는 없지만『상례비요』에는 초간본 이후 빠짐없이 싣고 있는 그림으로, 초종과 관련된 일련의 의절을 표시한 것이다. Ⓐ(국중본)에는 Ⓑ(충남대본)과 Ⓒ(경희대본)에 있는 '侍者가 죽은이의 上服을 가지고 앞쪽의 동쪽 처마로부터 지붕의 중류에 올라 북쪽을 향해 복을 한다(侍者以死者上服, 自前東榮, 升屋中霤, 北面復)'는 설명이 빠졌다.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모두 보완되어 있다.

③「出嫁女爲本宗降服圖」의 아래부분이다.『가례』에는 없지만『가례의절』에는 동일한 이름의 圖가 수록되어 있고[9] 위로는 고조부모로부터 아래로는 형제의 아들과 딸까지를 대상으로 출가한 여자가 本服을 降服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상례비요』는 여기에 "시집간 여자는 형제의 손자와 손녀에 대해서는 緦麻服을 하고 손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복이 없으며(婦無) 손녀가 시집을 간 경우에는 복이 없음(嫁無)"을 추가한 것이다. Ⓒ(경희대본)에는 '嫁無'라는 규정이 빠져 있다.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형제의 딸', '종부형제의 딸', '형제의 손녀' 및 '형제의 손자' 가운데 부인에 대한 규정을 제거하고 '자매의 아들: 소공, 부인: 시마(姊妹之子: 小功, 婦: 緦)'를 보완한다.

④「爲人後者爲本宗降服圖」의 위쪽 일부이다.『가례』와『가례의절』에는

---

7) 국립중앙도서관의 형태사항에는 '上下3葉花紋魚尾'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8) 충남대학교의 형태사항에는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四周雙邊'이다.
9) 丘濬,「喪禮·成服」,『家禮儀節』권4에 실려 있다.

실려 있지 않지만 『상례비요』는 초간본 이후 수록하고 있다. Ⓑ(충남대본)에는 그림의 왼쪽 모서리에 '두 남자가 각각 양자가 된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兩男各爲人後不再降)'는 설명이 있지만, Ⓐ(국중본)와 Ⓒ(경희대본)에는 빠졌다.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해당 설명이 모두 보완되어 있다.

⑤ 「雲翣圖」이다. 『가례』에는 「喪輦之圖」 가운데 하나로 '翣'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가례의절』에는 '黼翣', '黻翣', '雲翣'이 각각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림의 왼쪽 '사는 운삽 1개만을 사용한다.(士只用雲翣一)'는 설명이 Ⓐ(국중본)에는 옆 그림인 「神主全式」의 界線에 붙어 있는데 비하여, Ⓑ(충남대본)과 Ⓒ(경희대본)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사는 운삽 1개만을 사용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가례』는 '제후의 경우는 黼翣과 黻翣 그리고 畫翣을 각각 2개씩 사용한다.'[10]는 『예기』의 규정만을 도의 설명에 인용하고 있고, 『가례의절』은 『가례』에 규정되지 않은 大夫와 士에 대하여 '대부는 불삽 2개, 운삽 2개를 사용하고 사는 운삽 2개만을 사용'하는 것[11]으로 제시하였다. 『상례비요』의 초본에 해당하는 『喪禮通載』에는 "대부는 불삽 2개, 운삽 2개; 사는 운삽 2개; 서인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황명의 제도는 삼품이상은 4개, 5품이상은 2개이다."[12]라고 하였고, ❸(사사고본)과 ❻(을해제주향교개간본)을 제외한 나머지 간본에는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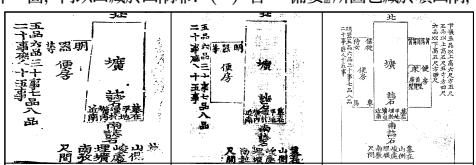
⑥ 「藏明器・下帳・苞・筲・甓・誌石圖」는 『가례』와 『가례의절』에는 없는 것이다. Ⓐ(국중본)와 Ⓑ(충남대본)에는 가운데 부분에 '苞는 광의 네 모퉁이에 묻는다(苞藏於壙四隅)'는 설명이 있지만, Ⓒ(경희대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상례비요』의 본문에 따르면 광중에 묻는 苞는 遣奠에 사용하고 남은 脯를 담는 대나무로 만든 용기로, 1개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13] 그 때문에 본 설명은 일찍부터 문제가 되었다. 黃宗海(1579~1642)는 鄭逑((1543~1620)의 문인으로 『疑禮問解』에도 28회에 걸쳐 김장생과 예에 관해 문답한 내용이 실려 있는 인물이다. 그의

10) 「喪大記」, 『禮記』 권21, "飾棺, 君 (…) 黼翣二, 黻翣二, 畫翣二."
11) 丘濬, 「圖・雲翣」, 『家禮儀節』 권5, "今擬, 大夫用黻翣二, 雲翣二; 士用雲翣二."
12) 申義慶, '殉葬之具', 『喪禮通載』 권1, "大夫黻翣二, 雲翣二; 士雲翣二; 庶人無之. ○ 皇明制, 三品以上四, 五品以上二."
13) 金長生, 「喪禮」, '苞'의 小註, 『喪禮備要』, "竹掩一, 以盛遣奠餘脯."

문집에는 "『상례비요』의 「藏明器圖」에 '포는 광의 네 모퉁이에 묻는다.'고 하였다. 포는 본래 1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네 모퉁이 묻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인의 질문에 "『상례비요』에서 포를 광의 네 모퉁이에 묻는 것으로 그린 것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나의 포를 네 모퉁이 나누어 놓을 수 있겠는가?"[14] 라고 대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문답이 진행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황종해의 몰년을 고려하면 논란이 된 『상례비요』는 초간본이다. Ⓒ(경희대본)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왼쪽의 편방이 사라지고 오른쪽 편방에 부장하는 물품의 내용도 변화된다.[15]

이상의 차이에 따르면, Ⓐ(국중본)는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이고 Ⓒ(경희대본)은 가장 늦은 시기의 간본이며 Ⓑ(충남대본)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간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⑤ 「雲翣圖」의 界線과 형태사항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 Ⓑ(충남대본)와 Ⓒ(경희대본)는 동일한 판본의 초쇄와 후쇄의 관계로서 Ⓐ(국중본)와는 다른 판본, 즉 초간본의 중간본임을 시사한다. 이는 李縡(1680~1746)의 증조부인 李有謙(1586~1663)의 『晩晦遺稿』에는 辛未(1631)년에 작성한 「喪禮備要重刊跋」이 실려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유겸이 咸興判官으로 부임한 다음 해에 『상례비요』의 간행을 요구하는 지역 선비들의 의견을 咸鏡道巡察使인 李安訥(1571~1637)에게 보고하자 刻工에게 명하여 목판에 새겨 널리 유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16] 이처럼 초간본이 간행된 10년 뒤, 金集의 戊子書院開刊本[17]이

15)



連山縣開刊本 四史庫本 家禮輯覽

14) 黃宗海, 「答問上○喪禮・明器苞笥」, 『朽淺先生集』, 卷3, "問: 按, 『備要』「藏明器圖」, 則謂'苞藏於壙四隅.' 苞本一箇, 何以曰藏於四隅耶? (…) 答: 『備要』所圖苞藏於壙四隅, 未曉其意. 焉有一苞而分置四隅之理. (…)"

16) 李有謙, 「喪禮備要重刊跋」, 『晩晦遺稿』(규장각, 古3428-329-v.1-2) 권3, "余佐咸之明年, 有士子數人, 得見此書於書笥中, 始知吾先生大有功於擴前聖所未發之禮, 敬愛此書, 不啻若神明與父母. 咸願刊刻以爲北關多士之所矜式, 故余於是告于方伯, 李相國東岳爺命工鋟梓, 以廣其布. 後日之學而行之, 都在諸君之勤不勤如何耳. 時辛未季冬, 門人李有謙謹跋."

17) 1621년 간본을 초간본으로 부르고 1631년 간본을 중간본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1648년 김집이 교정한 간본의 명칭을 무자서원개간본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는 개간본을 저본으로

간행되기 17년 전에 함경감영에서 초간본의 중간이 이루어졌다.

❷(연산현개간본)의 간행시기는 ❸(사사고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❸(사사고본)을 정리한 뒤에 다루기로 한다. ❸을 '四史庫본'으로 명명한 것은 〈표 1〉의 '소장처'에 제시한 4종의 간본이 赤裳山史庫, 五臺山史庫, 太白山史庫, 鼎足山史庫 등 네 곳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장서각소장본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무주적상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 조선총독부를 거쳐 장서각으로 이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적상산사고에 처음 입고된 시기와 그때 입고된 간본이 변동없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자료가 사고에 함께 보관된 形止案들이다. 형지안은 '實錄이나 璿源錄을 봉안한 각 史庫에서 曝曬, 考出, 補修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를 열어야 할 때 그 사유와 함께 보관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장서 점검 기록부이지만 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일반서책에 관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18]

형지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적상산사고에 『상례비요』(1책)와 『의례문해』(4책)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기록은 1665년 처음 나타나고[19]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에 두 책이 소장되었다는 사실 또한 1677년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20] 1665년 형지안에 기록된 『상례비요』와 『의례문해』가 사고없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형지안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3〉 藏書閣 소장 形止案에 기록된 『喪禮備要』 관련 기록

請求記號	時期	題目	保管櫝 番號
K2-3780	1665	赤裳山實錄謄出後曝曬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46	1672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81	1677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한 간본들이 乙酉書院重刊본, 乙丑遯巖書院重刊본 등으로 불리는 것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 무자서원개간본의 실물을 찾아내지 못한 점이다.

18)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한국서지학회, 2013, 293면.

19) 안미경, 같은 글, 325면.

20) 안미경,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157면.

請求記號	時期	題目	保管櫝 番號
K2-3777	1678	光海君日記還藏時實錄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47	1681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4911	1685	實錄曝曬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26	1687	赤裳山實錄閣修改時曝曬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83	1689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29	1690	赤裳山實錄考出時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63	1691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第10櫝-喪禮備要 1책; 제14櫝-疑禮問解 4책
K2-3784	1696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64	1700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27	1701	赤裳山實錄閣修改後實錄曝曬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695	1705	端宗大王實錄附錄奉安及曝曬時形止案	
K2-3748	1707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49	1709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50	1711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51	1713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52	1716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54	1721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4912	1723	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건, 疑禮問解 4책
K2-3782	1725	赤裳上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55	1727	赤裳山實錄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K2-3735	1729	實錄奉安考出曝曬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0	1742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1	1745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2	1747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3	1749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4	1753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45	1757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請求記號	時期	題目	保管櫝 番號
K2-4906	1759	實錄曝曬及史閣修改時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4909	1761	實錄曝曬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4913	1764	實錄曝曬形止案	第6櫝-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65	1768	實錄曝曬形止案	第6櫝-(1秩)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4907	1772	實錄曝曬形止案	第6櫝-(1秩)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66	1779	實錄曝曬形止案	第43櫝-(1秩)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67	1790	實錄曝曬形止案	6櫃-(1秩)喪禮備要 1책, 疑禮問解 4책; 第21櫝-疑禮問解(1秩) 4책, 家禮輯覽(1秩) 4책
K2-3770	1803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劍字櫝-(1秩)喪禮備要; 薑字櫝-疑禮問解 (2件) 8책; 劍字櫝-家禮輯覽 4책
K2-3696	1807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劍字櫝-(1秩)喪禮備要; 醎字櫝-疑禮問解 (2件) 8책; 劍字櫝-家禮輯覽 10
K2-3768	1810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列字櫃-(1秩)喪禮備要; 三十二櫝-疑禮問解 (2件) 8책; 寒字櫝-家禮輯覽 4책
K2-3697	1813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劍字櫝-(1秩)喪禮備要; 騰字櫝-疑禮問解 (2件) 8책; 劍字櫝-家禮輯覽 10
K2-3698	1817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0	1825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1	1831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2	1835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3	1838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4	1841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5	1844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6	1847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7	1850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8	1852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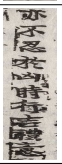
請求記號	時期	題目	保管櫝 番號
K2-3710	1856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09	1859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1	1864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71	1865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2	1871	茂朱府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5	1880	茂朱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3	1888	茂朱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78	1892	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4	1898	茂朱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3716	1900	茂朱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4894	1910	史閣調査形止案	李字櫝-(1秩)喪禮備要 1책; 崗字櫝-家禮輯覽 4책
K2-4664	1910 -1914	朝版財産目錄	喪禮備要(1秩) 1책, 家禮輯覽 4책 -茂朱史庫所藏書籍

〈표 3〉에 따르면, 『상례비요』는 1665년 처음 입고된 이후 보관궤의 번호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1914년 『조판재산목록』에 이르기까지 1책(1秩)이 그대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소장본은 1665년 이전 간행되고 적상산사고에 입고되어 전승된 바로 그 간본이다. 참고로, 『의례문해』는 1665년 처음 확인된 이후 1727년까지는 4책(1질)이었던 것이 1729년에는 8책(2질)로 늘어나 보관되다가 1817년 이후에는 기록에서 사라진다.[21] 『가례집람』은 1729년 4책

21) 현재 장서각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찍히고 권4의 끝에 '乙亥(1695)冬密陽府重刊'의 간기가 기록된 4책 1질(청구기호: K1-90)이 보관되어 있지만, 이는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었던 간본은 아니다.

(1질)이 처음 확인되고 1914년 『조판재산목록』에도 기록되어 장서각에 소장(청구기호: k1-106)된 것이 확인된다. 표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鄭逑의 『五先生禮說分類』(7책) 1질 또한 『상례비요』와 동일하게 1665년부터 기록에 나타나고 그 간본이 전승되어 현재 장서각에 보관(청구기호: K1-81)되어 있다.

〈표1〉의 '소장처'에 함께 기록된 규장각본(奎1258, 奎11502, 奎11679) 3종은 장서각본과 동일본이다. 단적으로 4종에는 埋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5곳 있는데,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22] 매목된 부분은 물론 그 이외의 곳에서도 인쇄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사고에 소장된 4종의 간본은 새로 판각을 하여 인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목을 이용하여 인쇄를 하면서 지나치게 마모된 부분은 매목을 하여 보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❶7張左4行	❷15張右1行	❸21張右4行	❹44張左10行	❺60張左6行
장서각본 (k1-116)					
규장각 (奎1258)본					
규장각 (奎11502)본					
규장각 (奎116790본					

22) 사사고본 매목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按, 「觀禮」疏: '禮事左袒, 無問吉凶, 禮皆袒左.'" ❷ "置衾于棺中, 垂其裔於四外." ❸ "按, '父在爲繼母·嫡母', 當蒙'父在爲母', '嫡孫, 父卒祖在, 爲母', 疑亦蒙'祖在爲祖母', 更詳之." ❹ "按, 『儀禮』·『家禮』則祔祭始)稱孝, 當從『儀禮』." ❺ "按, 前後有喪, 則前喪禫祭, 不可行於後喪中, 亦不忍於凶時行吉禮意也. 又不可追行於後喪畢後, 蓋過時不祭也."

❸(사사고본)이 기존의 판목을 활용하여 인쇄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것이 ❷(연산현개간본)이다. 하지만 두 본을 비교한 결과 ❷(연산현개간본)가 ❸(사사고본)보다 선행본임을 보여주는 다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①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두주가 없다는 점이다. ❸(사사고본)에는 6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다. ②「祠堂全圖」에는『가례』에서 인용한 사당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사당의 제도는 세 칸이고 바깥쪽에 中門을 만들며, 중문 바깥쪽에 두 개의 계단을 만드는데 모두 3단으로 한다. 동쪽에 있는 것을 阼階라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西階라 한다.(…)"[23]는 부분에서 '두 개의 계단을 만든다(爲兩階)'는 부분이 ❷(연산현개간본)에는 '계단을 만든다(爲階)'로 되어 있다. 인용의 과정에서 '兩'자가 빠진 것이다. ❸(사사고본)은 이를 '두 개의 계단(兩階)'으로 수정하고 이후의 간본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❸(사사고본)의 수정을 따른다.

③「斂袭圖」의 설명 가운데 ❸(사사고본)에는 '儀節'로 된 것이 ❷(연산현개간본)에는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今擬'로 되어 있다. ④ 초간본에 실려 있는「豐碑古制圖」가 ❸(사사고본)에는 빠진 반면 ❷(연산현개간본)에는 수록되어 있다. ⑤ '大斂·靈牀之具'에는 영상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기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초간본에는 '帷幕, 平牀, 薦, 席, 褥, 枕, 衣被, 鞋, 屛, 櫛合, 類盆, 帨巾'이, ❷(연산현개간본)에는 '牀, 帳, 薦, 席, 屛, 棺, 褥, 枕, 衣被, 櫛具, 類盆, 帨巾'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棺'은 잘못 기록한 것이다. ❸(사사고본)은 이를 바로 잡아 '牀, 帳, 薦, 席, 屛, 枕, 褥, 衣被, 櫛具, 類盆, 帨巾'으로 수정하고 이는 모든 간본에 예외 없이 반영된다.

⑥ '成服·成服之具'에는 옷고름(衣繫)이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초간본에는 "바로 작은 띠(小帶)이다. 베 4가닥을 사용하여 양 옷섶의 위에 꿰매단다.[『의절』](卽小帶. 用布四條, 綴於兩衿之上.〔『儀節』〕)"라고 되어 있다. ❷(연산현개간본)에는 "바로 작은 띠이다. 『의절』에는 베 4가닥을 사용하여 양 옷섶의 위에 꿰매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卽小帶. 『儀節』: 用布四條, 綴於兩衿之上.)"라고 하여 초간본의 마지막에 있던 '『의절』'을 앞으로 옮긴다. ❸(사사고본)은 "바로 작은

23)「通禮·祠堂」,『家禮』, '君子將營宮室, 先立祠堂於正寢之東.'의 本註, "祠堂之制三間, 外爲中門, 中門外爲兩階, 皆三級. 東曰阼階, 西曰西階. (…)"

띠이다. 『의절』에는 네 가닥을 안과 밖 옷섶에 꿰매 달아 서로 가리게 한다.(卽小帶. 『儀節』: 四條綴於內外衿, 使相掩.)"라고 수정하였고 이후 서원본계통 간본은 모두 ❸(사사고본)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⑦ '禫祭'의 본문인 '中月而禫'에는 '按'이 달려 있다. 두 개의 喪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後喪의 상중에는 물론 상이 끝난 뒤에도 前喪의 담제를 지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❷(연산현개간본)에는 마지막 부분에 "주자의 뜻과 정현의 주 그리고 『개원례』도 모두 그러하다(皆然)."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❸(사사고본)은 "주자의 뜻과 정현의 주 그리고 『개원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可考)."로 수정한다. 이후의 서원본계통에는 모두 '可考'로 되어 있지만, 경상감영본계통에는 '皆然'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❷(연산현개간본)가 ❸(사사고본)보다 선행본이면서 ❸(사사고본)의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자서원개간본이 간행되고 2년이 지난 1650년 12월 金集은 宋浚吉에게 "禮書는 本縣의 성주가 기필코 開刊을 하겠다고 하니 젊은 이들에게 빨리 쓰도록 하여 보내주기 바랍니다. 『상례비요』의 옛 것과 이전에 기록한 것을 함께 보내니 하나하나 교정하여 수정하거나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24]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이해 11월 동춘당은 淸州 沙山에 있는 선영 근처의 암자에서 『상례비요』를 교감하고 있었다.[25] 편지에서 언급한 '예서'는 『상례비요』다.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1651년 9월에 다시 송준길에게 편지를 보내 '도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설 가운데 논란이 되는 「外族·母黨·妻黨服之圖」의 圖名에 대한 송준길의 입장을 급히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26]

「외족·모당·처당복지도」는 『가례』와 『가례의절』에는 「外族·母黨·妻黨服圖」로,

24) 金集, 「與宋明甫書」 庚寅(1650)臘月二十三日, 『愼獨齋全書』 권7, "禮書, 本縣城主決欲開刊, 須令年少輩速爲寫送爲望. 『喪禮備要』舊件及前日所錄幷上, 一一校正修改如何?"

25) 宋浚吉, 「附錄·年譜」, 『同春堂續集』 권6.

26) 金集, 「與宋明甫書」 辛卯(1651)九月初六日, 『愼獨齋全書』 권7, "圖說中, 「外族母黨妻黨服圖」, 新本刪去'外族'二字, 尊意想已包於母黨云耶? 如姑之子, 姊妹之子, 女子之子, 以渠言之, 則是母黨, 而以己言之, 則似不包於母黨. 女壻亦不可言母黨也. 當初外族母黨疊言之意, 似非偶然. 外族云者, 初非經語且不分明, 而亦不宜刪去只言母黨. 玆欲仍舊存之, 未知如何? 圖說姑不送於刻所, 幸因便速爲回報如何."

그리고 초간본에는 「外族·母黨·妻黨服之圖」로 되어 있다. 편지에 따르면, '新本'인 戊子書院開刊本에는 송준길의 의견에 따라 「母黨·妻黨服之圖」로 수정한 듯하다. 하지만 김집은 내용 가운데 '고모의 아들', '자매의 아들', '딸의 아들', '사위' 등은 母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본래의 圖名인 「외족·모당·처당 복지도」로 환원하려는 생각을 전하고 이에 대한 송준길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때 송준길은 '母黨'에서 '外族·母黨'으로 환원하기 보다는 둘을 포괄할 수 있는 '外黨'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❷(연산현개간본)와 ❸(사사고본)은 물론 이후의 모든 간본에는 「外黨·妻黨服之圖」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명에 대한 협의가 일단락되고 도설을 정리하여 판각하는 곳으로 보내 간행한 것이 ❷(연산현개간본)인 것으로 보인다.

❹(을유서원중간본) 朴建中(1766~1841)의 『喪禮備要補』는 『상례비요』의 本文과 本圖를 대본 그대로 쓰고 그린 뒤 그것의 연원과 전개를 정밀하게 고증한 책이다. 1801년에 착수하여 1806년에 초고가 완성되고 30년 후인 1836년부터 1838년까지 다시 교정을 진행한 역작일 뿐 아니라, 『상례비요』가 조선에서 正典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저술이다. 『상례비요보』의 臺本이 바로 乙酉書院重刊본이므로 을유년은 1705년 또는 1765년이어야 한다.

❺(을축돈암서원중간본)는 현재 돈암서원에 소장된 책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책판을 직접 조사한 보고서에는 '1925년 중간할 때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때 판각한 것이 아닌 1648년 초간 책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25년에 기존의 책판을 사용하여 새로 인출한 것'[27]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무자서원개간본을 간행할 때 사용한 뒤 돈암서원에 소장되어 전승된 책판을 이용해 1925년에 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을축년 간기의 자료를 17세기 간본, 즉 1685년으로 추정하면서 돈암서원 소장 책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28]

돈암서원 소장 책판에는 제2張 「祠堂全圖」(4종[29]), 제10張 『外黨·妻黨服之圖」,

27)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2014, 한국국학진흥원, 274면.
28) 金香淑, 앞의 글, 2015, 135-138면.
29) 4종은 마모된 상태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妻爲夫黨服之圖」(1종), 제11張 「出嫁女爲本宗降服圖」, 「妾服圖」, 「爲人後者爲本宗降服圖」(1종)가 포함되어 있다. 「첩복도」에는 "君之父母, 按, 『儀禮』妾爲君之黨服得與女君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초간본에는 "齊衰不杖期"로 되어 있고 ❷(연산현개간본)에는 "君之父母, 按, 『儀禮』妾爲君之黨服得與女君同, 則爲君之父, 當斬衰三年, 母齊衰三年."로 되어 있으며, ❸(사사고본)에서야 본도와 동일하게 "君之父母, 按, 『儀禮』妾爲君之黨服得與女君同"으로 규정된다. 이는 돈암서원소장 책판은 ❷(연산현개간본) 이후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1648년 초간 책판으로 보는 입장'은 성립할 수 없다.

「사당전도」에는 『가례』 「통례·사당」의 본주에서 인용한 사당의 제도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고 설명의 1행과 2행 그리고 3행의 끝 글자는 4종 모두 '級', '令', '廚'이다. 이와 같이 편집된 간본으로는 1695년에 간행된 ❻(을해제주향교개간본)이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이와 함께 돈암서원에 소장된 판목이 이것뿐이고 1685년 간본을 위한 판목이라면 1705년 또는 1765년 간본인 ❹(을유서원중간본)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❹(을유서원중간본)가 ❺(을축돈암서원중간본)보다 늦은 시기의 간본이라면 돈암서원에는 ❹(을유서원중간본)의 판목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을축년은 1685년이 아닌 1745년, 1805년, 1865년, 1925년 중 하나여야 한다.

❻(을해제주향교개간본)에는 '康熙三十四年歲在乙亥(1695)冬, 濟州鄕校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李益泰(1633~1704)가 제주목사 재임시절(1694~1696) 겪었던 일과 견문내용을 일기형식을 빌어 기록한 『知瀛錄』에 "본주에 있는 책판은 화마로 인해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뒤에 『四書諺解』,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의 책판을 구비하였으나 보관할 곳이 없어 임시로 향교의 東齋에 두었다. (…) 또한 교생들이 각각 板材 하나씩을 준비해 『소학』과 『소학언해』, 『상례비요』 등을 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營牧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각수로 쓸 수 있는 사람 70여명에게 당번일 때 판각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가운데 잘 하는 사람 수십명을 뽑아 급료를 주고 교정토록 하였다. 3개월에 작업이 끝났다. 大字의 草書로 된 宣祖의 御筆 8첩을 얻어 간행하고 새로 판각한 『소학』 및 『상례』는 3건을 인쇄하여 제본한 뒤 세 읍에

있는 향교에 나누어 주었다.“30)고 기록하고 있다. 이익태는 송시열의 위판을 橘林書院에 봉안한 인물이다.31)

돈암서원본 계통에서는 ❸(사사고본)에서 처음 두주가 나타난 이후 다른 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두주가 부가된다. 4종의 이본에 부가된 두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四史庫)본, 乙亥濟州鄕校開刊본, 乙酉書院重刊본, 乙丑遯巖書院重刊본의 頭註

		❸1665이전(四史庫)본	❻1695 乙亥 濟州鄕校開刊본	❹1705, 1765 乙酉書院重刊본	❺乙丑遯巖書院重刊본
	頭註	6개	8개	7개	12개
初終	沐浴之具	「喪大記」疏: “「士喪禮」士沐稷, 是諸侯之士也. 此云‘沐粱’是天子之士也.”【3張左6行】	左同【3張左5行】	左同【3張左5行】	左同【3張左5行】
小斂	括髮免髽之具	疏: “齊衰以上, 受笄猶髽; 大功以下無髽.” 【10張左6行】	左同【10張左5.5行】	左同【10張左5.5行】	左同【10張左5.5行】
大斂	主人以下各歸喪次	「喪大記」“婦人不居廬, 不寢苫.”, “父不次於子, 兄不次於弟.” 「喪服小記」 “父不爲衆子次於外.” 【15張左8行】	左同【15張左4.5行】	左同【15張左4.5行】	左同【15張左4.5行】
成服	冠				④『問解』日: “先裹以布, 後乃作幅. 材廣五寸二分半, 作幅廣三寸, 用線縱縫之.”32) 【17張右7行】
	婦人服制				⑤『儀禮』連衣裳, 有杖. ○『家禮』大袖・長裙, 無杖. 『問解』日: “『備要』具載, 以爲用者之擇取.” 【17張左6行】
	童子服制		②「喪服」疏: “當室童子與族人爲禮, 有此服, 不及外親.” 【18張右6行】	左同【18張右5.5行】	左同【18張右5.5行】

30)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硏究」, 『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2006, 259면에서 재인용.

31) 「肅宗・21년」, 『書院謄錄』, “濟州牧使李益泰狀啓, ‘今八月二十八日季丁擇日, 三邑多士濟濟來會, 是白去乙. 臣與判官臣盧三錫, 敎授臣鄭希良, 率多士, 致齋, 先期告由後, 先正臣宋時烈位版, 依禮文, 奉安於橘林書院, 仍行祀事’事.”

		❸16650	전(四史庫)본	❻1695 乙亥 濟州鄕校開刊본	❹1705, 1765 乙酉書院重刊본	❺乙丑遯巖書院重刊본
						⑥『問解』曰: "惟祖父母・曾祖父母, 則依女適人不降之義, 似亦不降."[33]【18張右9行】
	小功 五月	疏: "君母在, 旣爲君母父母, 其己母之父母或亦兼服." 【23張左2行】	左同 【23張左2行】	左同 【23張左2行】	左同 【23張左2行】
奔喪	至家 成服	①「奔喪」'凡爲位者一袒', 疏: "此謂齊衰以下之喪, 初聞, 爲位一袒而已, 父母之喪, 則又哭三哭皆袒." 【36張左5行】	「奔喪」'凡爲位者一袒', 疏: "此謂齊衰以下之喪, 初聞, 爲位一袒而已, 父母之喪, 則又哭三哭皆袒."「奔喪」 '若除喪而後歸, 則齊衰以下免麻.' 註: "齊衰大功小功 緦麻服之親奔在除服 之後者, 惟首免, 腰麻絰 於墓所, 哭罷卽除." ○『儀節』: "今制, 仕宦者於杖期以下喪, 不得奔喪. 及其官滿而歸, 則往往在服除之後. 今擬, 戴白布巾, 具腰絰, 詣墓, 再拜哭踊, 隨俗, 具以酒饌以奠獻亦可." 【36張左6.4行】	左同 【36張左6行】	左同 【36張左6行】
反哭	祝文 式				⑦自祔祭稱孝子・孝孫, 見上題主祝及『問解』祔祭條 【48張左7.5行】
禫	設次, 陳吉 服		③『儀節』"主人詣祠堂, 焚香跪, 告曰: '孝子某, 將祗薦禫事, 敢請某親神主, 出就正寢.' 俯伏興, 再拜. 祝奉主櫝." 【61張右9行】	無	『續問解』曰: "禫祭出主告辭, 當用『丘儀』. 『丘儀』曰: '孝子某, 將祗薦禫事, 敢請某親神主, 出就正寢.'" 【61張右3行】
時祭	祝取 版	『儀節』'祝'上有'主人以下 皆跪'.【77張左6行】	左同 【77張左6行】	左同 【77張左6行】	左同 【77張左6行】

32) 金長生, 「喪禮・成服」, 『疑禮問解』 권2, '冠梁作幅'.
33) 金長生, 「喪禮・附童子服」, 『疑禮問解』 권3.

❸(사사고본)에 부가된 6개의 두주는 나머지 간본에 빠짐없이 반영된다. 다만 ①「분상」의 예설을 인용한 것은 「분상」의 관련 내용과 『가례의절』의 설을 보충하여 증보되면서 다른 간본에 반영된다. ❻(을해제주향교개간본)에서 추가한 2개 가운데 ②는 이후의 간본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③은 반영을 하지 않거나 『가례의절』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에서 『의례문해속』을 통해 간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된다. ❺(을축돈암서원중간본)에 증가된 것 가운데 3개(④, ⑤, ⑥)는 경상감영본 계통 가운데 崇禎四壬申(1812)嶺營改刊본에 부가된 것과 동일하고, 1개(⑦)만이 새롭게 부가된 것이다. 이는 ❺가 1812년 이후인 1865년 또는 1925년의 간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함경감영본·평안감영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3.1. 함경감영본 계통의 경우

咸鏡監營本 계통은 10행18자, 2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경감영본 계통의 현전본으로는 3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표 5〉 함경감영본 계통 이본

番號	刊本名	版種	構成	行字數	刊行地	所藏處	備考
❶	丙午咸鏡監營開刊본	목판본	1·2권 2책	10행 18자	함경감영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 문고 (ソ-13 199529)	1666년
❷	己巳咸營重刊본	목판본	1·2권 2책	10행 18자	함경감영	중국국가도서관(104.7 00504), 고려대(零本1책,만송A4-A9JT), 경기대[零本1책(坤), K117627]	1689년으로 추정
❸	甲寅吉州牧開刊본	목판본	1·2권 2책	10행 18자	길주목	한국유교문화진흥원	

❶(병오함경감영개간본) 소장기관의 상세서지에는 南龍翼(1628~1692)의 藏書印이 찍혀있는 것을 근거로 1666년에 간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閔鼎重(1628~1692)은 1664년 6월~1667년 8월까지 함경감사로 재직하였다. 그와 동생인 閔維重(1630~1687)은 宋浚吉(1606~1672)의 문인이었는데, 민유중은 송준길의 사위이기도 하다.[34] 민정중의 문집에는 『상례비요』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새로 사서삼경과 『계몽』, 『가례』, 『상례비요』 등의 책을 간행했으나 종이가 없어 널리 배포하지 못하였다.”[35]고 한 것과 “새로 인쇄한 『가례』와 『상례비요』 각 1부를 보낸다. 내가 바라는 바가 어찌 성인인 공자께서 홀로 서계실 때 아들인 백어에게 했던 가르침만 못하겠는가? 잃어버리지 말고 받아 읽어 훗날 자립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36]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상례비요』와 함께 간행된 책 중 일부가 병오년을 간기로 하여 현전한다.[37]

❷(기사함영중간본) 병오함경감영개간본이 간행된 1666년 이후 기사년은 1689년, 1749년이다. 경상감영본 계통의 판본이 30년~40년을 주기로 再刊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보면, 중간은 1689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1689년 『상례비요』를 간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鄭澔(1648~1736)는 鄭澈의 玄孫이며 宋時烈(1607~1689)의 문인이다. 1689년 己巳換局이 일어나자 鏡城判官으로 좌천되어 彰義祠에 몸소 제향하고 임진왜란 때 창의한 이의 자손들을 復戶하는 한편으로 『격몽요결』과 『상례비요』 등의 책을 새로 간행하였다고 한다.[38] ❸(갑인길주목개간본)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함경감영본 계통의 체재상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小字를 雙行이 아닌 單行으로 기록하였다. 둘째 1621년 초간본과 1648년 개간본 이후 分卷을 하지 않은 돈암서원본 계통 간본과는 달리 권1과 권2로 나누었다. 먼저 소자를 단행으로 기록한 것은 “자획이 매우 가늘어 쉽게 마모될 뿐 아니라 보기에도 방해가 된다”[39]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跋 1張, 序 2장, 凡例 2장, 圖 27張, 권1 85장,

---

34) 이봉규, 『동춘당집』 해제.

35) 閔鼎重, 「與李季周(李端夏)」, 『老峯集』, 권6, “新印四書三經與『啓蒙』·『家禮』·『喪禮備要』等書, 而無紙不能廣布.”

36) 閔鼎重, 「寄兒」, 『老峯集』, 권7, “新印『家禮』·『喪禮備要』各一部送去, 區區所望, 豈下於聖人獨立之訓耶! 宜勿失受讀, 以爲他日自立之地.”

37) 『中庸章句大全』[1책, 규장각(709),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家禮』(7권3책, 숙대(CL395-주희-가v1-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丙午暮春咸鏡監營開刊), 『論語諺解』(4권4책, 丙午季秋咸鏡監營開刊), 『大學諺解』[1책, 규장각(1094), 丙午仲夏咸鏡監營開刊], 『中庸諺解』[1책, 규장각(1062),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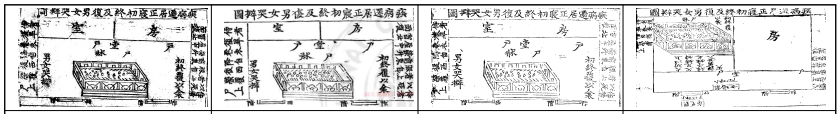
38) 李縡, 「領議政丈巖鄭公行狀」, 『陶菴先生集』 卷49, “己巳春拜兵曹佐郎, 未幾尤菴棺棘絶海, 仁顯王后遜于外第. 羣凶用事, 道一之黨, 遂與之合, 出公爲鏡城判官. 聞尤菴井邑受命之報, 弔服加麻以喪之, 遣人操文而祭之. (…) 爲文躬祭于彰義祠, 復其子孫之在本土者, 表孝子姜敏仁之門. 新刊『擊蒙要訣』, 『喪禮備要』等書. 收聚村秀, 給廩而課學, 遠邇風動, 習俗丕變.”

권2 95장 등 총 212장으로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불분권인 돈암서원본 계통 간본이 106장 내외이고 2권본인 평안감영본 계통이 125장, 경상감영본 계통 간본이 137장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분권을 하게된 것도 늘어난 분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1은 '初終'에서 '聞喪'까지이고 권2는 '治葬'에서 '墓祭'까지이다.

함경감영본 계통은 내용상으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먼저 圖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疾病遷居正寢, 初終及復, 男女哭擗圖」는『가례』와『가례의절』에는 없는 것이다. 圖名은『가례』「상례」의 '초종'뿐 아니라『가례』를 원용한『상례비요』의 의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병환이 심해지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하게 한다.(疾病遷居正寢)'는 부분은『가례』및『상례비요』의 본문이다. 초간본과 을축돈암서원중간본에는 이 부분이 '遷居正寢'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돈암서원본 계통과 평안감영본 계통 그리고 경상감영본 계통의 간본에는 모두 '시신을 정침으로 옮긴다(遷尸正寢)'로 되어 있다. ② 위의 도에서 尸牀이 室이 아닌 堂에 위치해 있다.[40] 함경감영본 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간본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尸牀이 室에 위치해 있다. 정침은 房, 室, 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경감영본 계통에서는 '천거정침'의 정침을 정침의 당으로 해석한 것이고 기타 간본들은 정침의 실로 본 것이다.

③「陳大斂絞布衾圖」에 '橫絞一・橫絞二・橫絞三・橫絞四・橫絞五, 縱絞一'로 되어 있다.『가례』에는 '橫絞一・橫絞二・橫絞三・橫絞四・橫絞五, 縱絞一'로 되어 있지만 횡교의 경우 각각 3가닥씩 모두 15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가례의절』은 본 도와 모양은 같지만 橫絞一, 二, 三, 四, 五, 縱絞一 등의 표시는 없다. 초간본을 포함한 모든 간본에는 '橫絞一・橫絞二・橫絞三・橫絞四

39)「凡例」, "舊本雙書處, 字畫甚細, 易於刓缺, 且妨考閱. 今刻幷皆單行書之, 稍大其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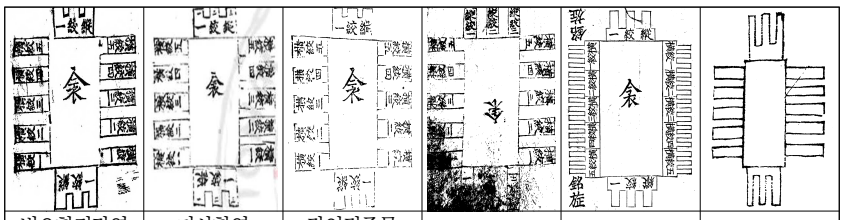
병오함경감영개간본 | 기사함영중간본 | 갑인길주목개간본 | 초간본

40) (다음 면 각주 참조)

·橫絞五, 縱絞一·縱絞二·縱絞三'으로 되어 있다.[41] ④「載轜遣奠之圖」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발인을 하기 위하여 柩를 상여에 싣고 견전을 올릴 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례』, 『가례의절』은 물론 초간본을 포함한 모든 간본에 없는 것이다.

⑤「豐碑古制圖」를 제거하였다. 풍비는 큰 나무를 비석모양으로 깎아 椁의 사방에 세운 것으로, 풍비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轆轤를 연결한 뒤 관을 내리는 줄을 걸어 사용한다.[42] 해당 도는 초간본, 연산현개간본, 평안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에는 수록되어 있다. ⑥「時祭每位設饌圖」가「正寢時祭之圖」의 다음,「尺式」이전으로 이동 배치되어 있다. 본 도는 『상례비요』의 내용에 따르면「反哭受弔之圖」가 아니라「正寢時祭之圖」다음에 있어야 한다. 도의 순서를 본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경상감영본 계통과 돈암서원본 계통 가운데 을유서원중간본, 을축돈암서원중간본은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지만 초기 돈암서원본 계통과 평안감영본 계통에는「反哭受弔之圖」밑에 그대로 배치하였다.

함경감영본 계통 ❶(병오함경감영개간본)에는 21개, ❷(기사함영중간본)에는 23개, ❸(갑인길주목개간본)에는 19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다. 두주를 처음 부가한 돈암서원본 계통의 四史庫본에는 6개가 수록되어 있다. 함경감영본 계통은 이 6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거기에 17개를 추가한 것이다. 본문을 교감한 것이 4개, 본문을 교정한 것이 8개[43], 예설을 보완한 것이 11개이다.



병오함경감영 개간본	기사함영 중간본	갑인길주목 개간본	초간본	가례	가례의절

41)「陳大斂絞布衾圖」

42)「檀弓下」,『禮記』권4, '公室은 豐碑에 준해서 하고, 三家는 환영桓楹에 준해서 한다.(公室視豐碑, 三家視桓楹.)' 한 것에 대한 鄭玄注, "豐碑, 斲大木爲之, 形如石碑. 於槨前後四角樹之, 穿中於間爲鹿盧, 下棺以繂繞."

43) 본문을 교감한 4개 모두는 경상감영본 계통에도 수록되어 있고, 본문을 교정한 경우도 대부분

세 간본에 부가된 총 23개 두주 가운데 17개는 내용은 물론 두주가 붙은 행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6개뿐이다.

① "『의례』「사상례」의 정현주에 '衣尸란 시신 위에 덮는 것으로 마치 魂이 돌아온 것처럼 하는 것이다.' 하였다.(「士喪禮」註: '衣尸者, 覆之, 若得魂反之.' 【2張左2行】)" 이는 復을 할 때 사용한 의복을 시신 위에 덮는 의절의 의미를 부연설명한 것이다. '衣尸'는 『상례비요』의 본문 1행에 나온다. ❷(기사함영중간본)에서 두주의 위치를 1행으로 옮긴 것은 2행의 본문인 '「士喪禮」楔齒'에 대한 두주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 두주는 다른 계통의 간본에는 없다. ❸(갑인길주목개간본)에는 본 두주가 없다.

② "여자의 상에는 掩(머리싸개)을 사용한다.(女喪用掩.【11張右6行】)" 본 두주는 ❷(기사함영중간본)에서 증보한 것으로, "남자의 상에 幅巾을 사용한다면 여자의 상에는 고례에 의거해 掩을 사용해야 할 듯하다."[44]는 『상례비요』의 본문 위에 부가한 것이다. 본문과 중복된 내용이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돈암서원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 평안감영본 계통 등 다른 어떤 간본에도 동일한 내용의 두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③ "『예기』「상대기」 '무릇 옷을 진설할 때에는 말지 않고 펴놓으며, 正色이 아닌 옷은 진설하는 데 포함시키지 않는다.'에 대한 (陳澔의) 주에 '정색이 아닌 옷이란 間色이나 雜色이다.' 하였다.(「喪大記」'凡陳衣, 不詘, 非列采不入.' 注: '非列采, 爲間色雜色也.'【26張左5行】)" 본 두주는 『상례비요』 '小斂'의 본문에서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진설한다."[45]고 한 것에 대해 진설하는 방식과 옷의 종류에 대해 보완설명한 것이다. 함경감영본 계통에만 있는 두주이다.

④ "범중운이 再嫁한 양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그의 할머니가 '예에는 재가를 한 어머니에 대해서 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율에는 심상삼년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사람이 중운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중운에게 율대로 복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朱子는 '변례의 사안을 처리

경상감영본 계통에 첨가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경상감영본 계통을 다룰 때 언급하기로 한다.

44) 金長生, 「初終・襲具・幅巾」, 『喪禮備要』, "男喪用幅巾, 則女喪恐當依古用掩."

45) 金長生, 「小斂」, 『喪禮備要』, "執事者陳小斂衣衾,"

하면서 권도를 잃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였다.(范仲芸遭所後嫁母喪. 其王夫人曰: '禮, 不爲嫁母服, 而律有心喪三年之文, 是得不爲芸母乎?' 命芸服喪如律. 朱子曰: '處變事而不失其權.'【52張左1.5行】)" 본 두주는 『상례비요』 '成服'의 본문에서 『通典』을 인용하여 "양어머니와 양할머니가 쫓겨난 경우에는 (뒤에 사망하더라도) 복이 없다.'[46]한 것에 대해 재가한 경우는 쫓겨난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경상감영본 계통에는 있지만 돈암서원본 계통에는 보이지 않는다.

⑤ "『예기』「분상」에 '무릇 곡위를 설치하는 자는 한 번 袒을 한다.' 한 것에 대해 (공영달의) 疏에서는 '이는 자최 이하의 상에서는 처음 부고를 듣고 곡위를 설치할 때 한 번 단을 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부모의 상의 경우에는 又哭을 하고 三哭을 할 때 모두 단을 한다.' 하였다.(「奔喪」'凡爲位者一袒', 疏: '此謂齊衰以下之喪, 初聞, 爲位一袒而已, 父母之喪, 則又哭三哭皆袒.'【84張左9行】)" 본 두주가 부가된 위치는 ❶(병오함경감영개간본), ❷(기사함영중간본) 모두 "분상을 한다면 집에 도착해 성복을 한다.(若奔喪, 則至家成服)"는 본문과 관련된 곳이다. 하지만 내용상 "자최 이하의 상은 부고를 들으면 곡위를 마련하여 곡을 한다."는 바로 앞의 본문과 관련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부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두주는 사사고본 이후 대부분의 간본에 부가되지만, 을해제주향교개간본, 을유서원중간본, 경상감영본 계통에는 「분상」의 내용이 보강되고 『가례의절』의 관련 논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⑥ 『상례비요』 '祠堂之儀'의 본문에 기록된 관직을 제수받아 사당에 고할 때의 告辭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이 "아우나 아들이라면 모의 아들 모라고 한다.(若弟子, 則言某之子某)"는 부분의 '子'를 『가례』에 따라[47] 바로 잡은 것이다. 두주에 따른다면 ❶(병오함경감영개간본), ❸(갑인길주목개간본)은 '某의 某某'가 되어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❷(기사함영중간본)는 이를 '모의 某親(관계) 某(이름)'로 규정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본 두주는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반복하여 나타난다.

두주의 측면에서 ❷(기사함영중간본)와 ❸(갑인길주목개간본)은 ❶(병오

46) 金長生, 「成服・齊衰杖期」, 『喪禮備要』, "『通典』, 許猛曰: '所後母及祖母被出, 皆無服.'"
47) 「通禮・祠堂」, '有事則告'의 本註, 『家禮』 권1, "若弟子則言'某之某某.'"

함경감영개간본)에서 부가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것을 더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다. ⑤의 경우 ❶(병오함경감영개간본)과 ❸(갑인길주목개간본)은 『가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교감을 진행한 것이라면 ❷(기사함영중간본)는 『가례』 또는 『상례비요』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본 두주는 ❸(갑인길주목개간본)이 ❷(기사함영중간본)보다 선행본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2. 평안감영본 계통의 경우

平安監營本 계통은 9행21자, 2권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전본으로는 2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표 6〉 평안감영본 계통 이본

番號	刊本名	版種	構成	行字數	刊行地	所藏處	備考
❶	平安監營開刊본	목판본	상・하권 1책	9행 21자	평안 감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670년 추정
❷	成川府開刊본	목판본	상・하권 1책	9행 21자		이화여대(181.214 신78), 계명대(180.424 신의경사), 장서각(A5E-24D)	

❶(평안감영개간본) 李時恒(1672~1736)은 1714년 올린 「關西辨誣疏」에서 "驪陽 府院君 閔維重이 본도의 관찰사로 있을 때부터 선비들의 기풍을 바로 세우고 예교를 오롯이 숭상하며 『소학』과 『오례의』 등의 책을 인쇄하여 열읍 향교에 배포하고 유생들을 등용하였다. 또한 관혼상제의 의절을 가르치고 『가례』와 『상례비요』를 간행하여 예서를 널리 보급하고 예속을 행하도로 권장하였다."[48]라고 기록하고 있다. 閔維重(1630~1687)은 동춘당의 사위이고 肅宗의 장인으로서, 1669~1671년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민유중의 문집에는 이와 관련하여 1669년 4월 동춘당에게 보낸 편지에 "『상례비요』가

48) 李時恒, 「關西辨誣疏」, 『和隱集』 권4, "自驪陽府院君臣閔維重按節本道之時, 扶植士風, 專尙禮敎, 印布『小學』及『五禮儀』等書於列邑鄕校, 引進儒生. 又敎以四禮儀節, 又刊『家禮』及『喪禮備要』之板, 廣布禮書, 勸行禮俗."

이곳에는 10여건이 있는데 옛 간본인 듯합니다."[49]라는 기록만이 남아 있다. 동춘당이 예서의 간행에 대해 민정중, 민유중 형제와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禮書도 이미 인쇄를 시작하였는가? 기쁜 마음으로 新本이 눈을 씻어 줄 날을 기다리네."[50]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❷(성천부개간본)는 평안감영개간본과 체재가 동일하지만 두주가 1개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간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평안감영본 계통 간본의 체재상 특징은 상, 하 2권으로 분권을 하되 1책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권은 '初終'에서 '弔奠賻'까지이고 하권은 '聞喪'에서 '墓祭'까지이다. 이는 함경감영본 계통의 간본이 '初終'에서 '聞喪'까지를 제1권으로 하고 '治葬'에서 '墓祭'까지를 제 2권으로 구성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상감영본 계통은 함경감영본 계통의 분권 방식을 따르고 있다.

평안감영본 계통 간본의 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圖의 경우, ① 초간본 「疾病遷居正寢, 初終及復, 男女哭擗圖」가 「疾病遷尸正寢, 初終及復, 男女哭擗圖」로, 즉 '遷居正寢'이 '遷尸正寢'으로 수정되었다. ② 「斂衾圖」는 『家禮儀節』의 것을 가져온 것으로, 왼쪽과 아랫쪽에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쪽 부분에서 "『주례』에 '흑색과 청색을 배합한 것을 불이라 한다.' 하였다. 지금은 이에 준하여 흑색과 청색 두 가지 색을 순차대로 배열하여 亞자의 형태를 만든다. (가선의 구름 모양은) 『가례』를 따라 모두 자색으로 그려야 한다. (『周禮』'黑與靑謂之黻.' 今擬, 用黑靑二色, 相間爲亞形. 當從『家禮』皆畫以紫.)"라고 한 부분이다. '지금 이에 준하여(今擬)'라고 한 서술의 주체는 『가례의절』의 저자인 丘濬이다. 이를 그대로 『상례비요』에 인용한다면 그 주체가 金長生으로 바뀌게 된다. 초간본, 연산현개간본 그리고 평안감영본 계통에 '今擬'로 되어 있는 것을 함경감영본 계통은 물론 돈암서원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에서는 예외 없이 '『儀節』'로 수정한다. 이는 해당 설명이 『가례의절』에서 인용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평안감영본 계통은 연산현개간본과 친연성을 가진 판본이다. 위에서 살펴

49) 閔維重, 「上同春先生」, 『文貞公遺稿』 卷10, "『備要』書此地有十餘件, 似是舊刊矣.[丁酉(1669)四月晦]"
50) 宋浚吉, 「與閔大受」, 『同春堂集』(續集) 권3, "禮書亦已始刊. 喜佇新本之揩眼耳."

본 「불삽도」의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함경감영본 계통에는 싣지 않은 「풍비고제도」를 수록하였다. 「풍비고제도」는 초간본과 돈암서원개간본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간본인 연산현개간본에는 실려 있지만, 四史庫본 이후 돈암서원중간본(乙酉, 乙丑)에는 수록되지 않는다. ② 「妾服圖」에는 첩이 "남편(君)의 부모: 생각건대, 『의례』에 첩이 군의 친족을 위해서 하는 복이 여군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군의 부를 위해서는 참최 삼년을 해야 하고 군의 모를 위해서는 자최삼년을 해야한다.(按, 『儀禮』妾爲君之黨服得與女君同, 則爲君之父, 當斬衰三年, 母齊衰三年)"고 되어 있다. 초간본에는 "남편의 부모에 대해 자최부장기를 한다.(君之父母, 齊衰不杖期)"고 되어 있고 연산현개간본은 평안감영본 계통과 동일하다. 四史庫본 이후 함경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은 물론 돈암서원중간본(乙酉, 乙丑)에는 "남편의 부모: 생각건대 『의례』에 첩위 군의 친족을 위해서 하는 복은 女君(정실부인)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按, 『儀禮』妾爲君之黨服得與女君同)"고 되어 있다.

③ 『상례비요』 '成服・成服之具'에는 옷고름(衣繫)이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초간본에는 "바로 작은 띠(小帶)이다. 베 4가닥을 사용하여 양 옷섶의 위에 꿰매단다.(『의절』)"[51]라고 되어 있다. 연산현개간본에는 "바로 작은 띠이다. 『의절』에는 베 4가닥을 사용하여 양 옷섶의 위에 꿰매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52]라고 하여 초간본의 마지막에 있던 '『의절』'을 앞으로 옮긴다. 평안감영본 계통은 연산현개간본과 동일하다. 四史庫본 이후 함경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은 물론 돈암서원중간본(乙酉, 乙丑)에는 "바로 작은 띠이다. 『의절』에는 네 가닥을 안과 밖 옷섶에 꿰매 달아 서로 가리게 한다."[53]라고 수정되어 있다. ④ '성복' 자최장기의 본문에 "생각건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계모・적모를 위한 것과 적손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어머니를 위한 경우는 예에서 모두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한다는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인 듯하다.

51) "卽小帶. 用布四條, 綴於兩衿之上.(『儀節』)"
52) "卽小帶. 『儀節』: 用布四條, 綴於兩衿之上."
53) "卽小帶. 『儀節』: 四條綴於內外衿, 使相掩."

다시 살펴보라.(按, 父在爲繼母・嫡母及嫡孫父卒祖在爲母, 禮皆不言, 疑蒙父在爲母之文故也. 更詳之.)"로 되어 있다. 초간본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연산현개간본은 평안감영본 계통과 동일하다. 四史庫본 이후 함경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은 물론 돈암서원중간본(乙酉, 乙丑)에는 "생각건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계모・적모를 위한 것과 적손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어머니를 위한 경우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한다는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손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어머니를 위한 경우 또한 할아버지가 생존 중에 할머니를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듯하다. 다시 살펴보라.(按, 父在爲繼母・嫡母, 當蒙父在爲母, 嫡孫父卒祖在爲母, 疑亦蒙祖在爲祖母. 更詳之."로 되어 있다.

❶(평안감영개간본)에는 1개의 두주가, ❷(성천부개간본)에는 1개를 추가한 2개가 부가되어 있다.

〈표 7〉 평안감영본 계통 간본의 두주

		❶(평안감영개간본)	❷(성천부개간본)
奔喪	至家成服		②「奔喪」"凡爲位者一祖", 疏: "此謂齊衰以下之喪, 初聞, 爲位一祖而已, 父母之喪, 則又哭三哭皆祖." 【3張右3行】
時祭	: 祝取版	①『儀節』'祝'上有 '主人以下皆跪.'【53張左2.7行】	左同【53張左3行】
		1개	2개

①은 四史庫본에 처음 부가된 이후 모든 간본에 나타나고, ②는 四史庫본에 처음 부가된 이후 평안감영개간본만을 제외하고 모든 간본에 나타나지만 을해제주향교개간본 이후 내용이 증보되면서 변화된다.

4. 경상감영본 계통 이본의 종류와 특징

慶尙監營本 계통은 8행21자, 2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감영본 계통의 현전본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간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현전본으로는 6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표 8〉 경상감영본 계통의 이본

番號	刊本名	版種	構成	行字數	刊行地	所藏處	刊記
❶	崇禎再甲子 嶺營開刊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慶尙 監營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외 다수	1744년
❷	崇禎三壬寅 嶺營改刊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慶尙 監營	국립중앙도서관(우산古5213-19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외 다수	1782년
❸	崇禎四壬申 嶺營改刊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慶尙 監營	국립중앙도서관(古5213-25),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외 다수	1812년
❹	崇禎四戊申 嶺營改刊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慶尙 監營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외 다수	1848년
❺	崇禎五戊子 嶺營改刊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慶尙 監營	단국대(385.4 신716사)	1888년
❻	在田堂書鋪본	목판본	상·하권 2책	8行 21字	大邱	국회도서관(古 395.23 ㅅ578ㅅ),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외 다수	1913년

경상감영본 계통의 체재상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함경감영본 계통의 간본과 마찬가지로 '初終'에서 '聞喪', '治葬'에서 '墓祭'까지로 분권되어 있다. 둘째는 소자를 쌍행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함경감영본 계통은 소자를 단행으로 기록하고 10행18자의 체재로 구성함으로써 판목의 내구성과 간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분량이 두배 가량 증가하였다. 평안감영본 계통의 간본은 9행21자의 체재를 취하면서 125장으로 분량이 줄었고, 경상감영본 계통은 8행21자로 구성하면서 137장이 되었다. 서원본계통은 개간본 이후 변함없이 10행23자 불분권 1책의 체재를 유지하였다.

경상감영본 계통의 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銘旌圖」에서 머리부분 장식이 이무기머리(螭頭) 모양에서 봉황새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함경감영본 계통과 평안감영본 계통 간본은 모두 이무기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서원본 계통의 경우는 초간본과 연산현개간본, 사사고본 등 17세기에 간행된 간본은 이무기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17세기 말인 을해제주향교개간본에서 처음 봉황새 모양이 나타나고 이후 18세기까지 지속된다. ②「풍비고제도」를 수록하고 있다.「풍비고제도」는 초간본과 연산현개간본, 평안감영본 계통 간본에 수록되어 있을 뿐 돈암서원본 계통, 함경감영본 계통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③「成墳圖」가

이전의 어떤 계통의 간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양이다.[54] ④「時祭每位設饌圖」를『상례비요』본문 의절의 진행 순서에 맞추어「정침시제지도」다음, '척식' 이전으로 이동배치하였다. 이는 함경감영본 계통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두주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전하는 간본 가운데 두주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돈암서원본 계통의 간본인 四四庫본(1665년 이전)으로, 6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고 이후 을유서원중간본에는 7개, 을축돈암서원중간본에는 12개가 수록되었다. 평안감영본 계통에는 1~2개, 함경감영본 계통에는 17~21개였다. 이에 비해 경상감영본 계통의 간본에는 83개(❶1744년본), 72개(❷1782년본), 82개(❸1812년본), 74개(❹1848년본), 84개(❻1913년본)가 부가되어 있다. 전체 86개 가운데 본문의 글자를 교감한 것이 14개, 본문의 오류를 교정한 것이 10개, 관련 예설을 보완한 것이 67개이다.

본문의 글자를 교감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小斂'의 본주 "부인은 별실에서 북상투(髽)를 한다.(婦人髽於別室.)"에는 "(「사상례・기」) 빙시를 마치면 袒을 하고 免을 하며, 상투를 묶고, 絞帶를 한다. 중주인은 布帶를 한다.(既馮尸, 主人袒免, 髽髮, 絞帶. 衆主人布帶.)"라는 小註가 부가되어 있다. "「사상례・기」에는 '袒' 아래 '免'자가 없다.(「士喪・記」'袒'下無'免'字.【17張右8行】)"는 본 두주는『의례』의 기문을 인용한『상례비요』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있는 두주이다.

② '成服・成服之具' 衣繫에는 "다른 간본에는 '베 4가닥을 사용하여 양 옷섶의 위에 꿰매단다.'로 되어 있다.(一本, 用布四條, 綴於兩衿之上.【22張左7行】)"라는 두주가 달려있다. '다른 간본'에 해당하는 것은 초간본, 연산현개간본, 평안감영본 계통이다. 본 간본의 본문은 "바로 작은 띠이다.『의절』에는 네 가닥을 안과 밖 옷섶에 꿰매 달아 서로 가리게 한다."[55]로 되어 있다. 본문을 개정하고 두주를 부가한 의도는 의계에 대한『가례의절』의 규정을 보다

54)

				
초간본	(연산현개간)본	함경감영본 계통	평안감영본 계통	경상감영본 계통

55) 卽小帶.『儀節』: 四條綴於內外衿, 使相掩.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다.[56]

③ '慰人父母亡疏'에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先某封'이라 한다. 봉호가 없으면 '先夫人'이라 한다.(母云, '先某封.' 無封即云, '先夫人.')"는 내용이 실려 있다. 『가례』와 『가례의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가례원류』의 주에 '夫人을 孺人으로 고친다.' 하였다.(『源流』註: '改夫人爲孺人.'(【40張左6行】)"는 것이다. 하지만 『가례원류』의 해당 부분에는 "『상례비요』에 '이제 부인을 유인으로 고친다.' 하였다.(『備要』: '今改夫人爲孺人.')"라고 하여 『상례비요』의 설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전 간본 가운데 부인을 유인으로 바꾼 것도, 바꾸어야 한다고 소주를 붙인 것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있는 두주이다.

④ '治葬・窆葬之具'에는 石灰, 黃土, 細沙를 나열한 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뒤섞을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적당하게 한다.(三物拌均時, 用水多少適中.)"고 되어 있다. 두주는 "(물의) 양은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곳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다.('多少適中'一作'愈多愈好'.【2張右6行】)"는 내용이다. '다른 곳'은 초간본과 을축서원중간본, 사계전서본을 제외한 모든 간본이다. 초간본에는 삼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고 후자는 경상감영본 계통과 마찬가지인 '多少適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례비요』의 오류를 수정한 사례이다.

⑤ '治葬・苞'의 본주에는 "대나무 싸개 하나로, 견전을 하고 남은 포를 담는다.(竹掩一, 以盛遣奠餘脯.)"라고 되어 있다. 이는 『가례』의 본주 그대로이다. 『가례의절』에는 "견전을 하고 남은 脯와 醢를 담는다."로 되어 있고 두주는 『가례의절』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醢는 포가 아닌 甖에 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있는 두주이다.

⑥ '啓殯'의 본주에는 "지금은 빈을 하지 않으니 이 예(啟殯奠)는 시행할 곳이 없다. 또 節文을 다 없앨 수는 없으므로 이 예를 한다.(今旣不塗殯, 則其禮無所施. 又不可全無節文, 故爲此禮也.)"라고 하였다. 이는 『가례』의 본주를 인용한 것이지만,

56) 丘濬, 「喪禮・喪服制度」, 『家禮儀節』 권4에는 "옷고름 네 가닥을 꿰매 한결같이 조복이나 제복과 같이 하고 바깥 옷섶으로 안 옷섶의 위를 가리게 한다면, 옷을 갖추어 입을 때 최가 정확하게 심장 부위에 오게 될 것이다.(綴繫帶四條, 一如朝祭等服, 以外衿掩於內衿之上, 則具服之際, 衰正當心矣.)"로 되어 있다.

『가례』와 『가례의절』에는 '또(又)' 앞에 '그러나(然)'가 있다. "'施'자 밑에 '然'자가 있기도 하다.('施'下或有'然'字.【8張右3行】)"는 두주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상례비요』의 간본 가운데 '然'자가 있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다.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있는 두주이다.

⑦ '小祥' "임시처소를 설치하고 練服을 진설한다.(設次, 陳練服)"는 조목의 본주에 "남자들은 연복으로 관을 만들고 首絰·負版·辟領·衰를 제거한다.(男子以練服爲冠, 去首絰·負版·辟領·衰.)" 하였다. 『가례』와 『가례의절』도 동일하다.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는 규정이 『국조오례의』에는 '연포로 관을 만든다.(練布爲冠)'로 되어 있다.[57]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고 할 때의 '服'은 '布'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 『국조오례의』에서 이것을 인용할 때도 '布'로 썼다.('練服爲冠'之服, 恐當作'布', 『五禮儀』引此亦作布.【28張左2行】)"고 한 본 두주는 『가례』와 『가례의절』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경상감영본 계통에만 있다.

⑧ '大祥' "靈座를 치우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구석진 곳에 버린다.(徹靈座. 斷杖, 棄之屛處)"의 소주에는 「喪服小記」의 "삼년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반드시 (연제와 대상제 등) 두 번 제사를 지낸다.(三年而后葬者, 必再祭)"고 한 것을 인용하면서 '后'자를 빠뜨렸다. "본문에는 '而' 밑에 '后'자가 있다.(本文'而'下有'后'字.【31張左7行】)"는 본 두주는 이를 지적하여 『상례비요』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함경감영본 계통에만 동일한 두주가 있다.

⑨ ⑧과 동일한 부분의 소주에는 『예기』「잡기」의 "부친의 喪이 小祥은 지나고 아직 大祥 이전으로 상복을 벗지 않은 상태인데 모친이 사망하면, 부친의 상복을 벗는 대상제에서 대상제의 옷(除服)을 입고 제사를 지내며, 대상제를 마친 다음 모친을 위한 상복으로 도로 갈아입는다.(有父之喪, 如未沒喪而母死, 其除父之喪也, 服其除服, 卒事, 反喪服.)"를 인용하면서 '除父之喪'을 '除父之服'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이 본 두주('除父之服', 本作'除父喪'.【32張右2行】)이다. 함경감영본 계통에만 동일한 두주가 있다.

⑩ ⑧과 동일한 부분의 소주에는 『예기』「曾子問」 陳澔의 주 "가령 이달에

57) 「大夫·士·庶人喪」, '小祥', 『國朝五禮儀』 권8 凶禮.

군주에 대한 복을 벗었다면 다음 달에 小祥祭를 지내고, 다시 그 다음 달에 大祥祭를 지낸다. 부모의 상에 소상을 지낸 뒤에 군주의 상을 만나면 다른 때 군주에 대한 복을 벗은 뒤에 대상제만을 지낸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適子가 제사를 주관하면서 관직에 있을 경우를 가리킨다. 만일 서자는 관직에 있으면서 군주의 복을 하고 적자는 벼슬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시기에 따라 부모의 상례를 거행한다."[58]를 인용하면서 '若'자를 빠뜨렸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이 본 두주(本註, '者'字下有'若'字.【32張右6行】)이다.

⑪ '禫祭'의 소주에는 사계의 按說이 기록되어 있다. 병유상의 상황에서 前喪의 담제를 後喪이 진행 중일 때 지낼 수 없음과 후상이 끝난 뒤에 전상의 담제를 소급하여 지낼 수 없음을 밝히면서 "주자의 뜻과 정현의 주, 그리고 『개원례』가 모두 그렇다.(朱子之意, 若鄭註·『開元禮』皆然)"고 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두 그렇다(皆然)'가 다른 곳에는 '살펴볼 수 있다(可考)'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 본 두주('皆然'一作'可考'.【33張右1行】)이다. '다른 곳'은 함경감영본 계통, 四史庫본 이후의 돈암서원본 계통 간본이 해당된다.

⑫ '忌祭'의 告辭는 『가례』와 『가례의절』을 인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두주는 고사의 첫머리에 고하는 주체가 기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가례』의 時祭와 禰祭 그리고 忌祭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孝子' 혹은 '孝孫某'를 덧붙여야 할 듯하다고 지적한 것이 본 두주(告辭本丘儀, 而以『家禮』時禰忌三條通看, 則'今以'上恐有'孝子'或'孝孫某'字. 當更考.【59張左6.5行】)이다.

본문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5개이다. ①「遷尸, 沐浴, 襲, 奠, 爲位, 飯含, 卒襲, 設靈座, 親厚入哭圖」에는 左醢右脯의 방식으로 진설이 되어 있고「及墓, 下棺, 祠后土, 題木主之圖」에는 左脯右醢의 방식으로 奠이 진설되어 있다. 두주(南溪曰: "左脯右醢乃象生時, 右脯左醢似是寫誤."【5張右】)는 박세채의 설을 인용하여 좌해우포의 진설방식이 전사의 과정에서 생긴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다. ②「出嫁女爲本宗降服圖」에는 자매의 아들에 대한 복이 소공으로 표시된 반면, 형제의 딸과

58) 曾子問」, 『禮記』 권7, 「'君之喪服除, 而后殷祭, 禮也'에 대한 陳澔의 주, "假如此月除君服, 卽次月行小祥之祭, 又次月行大祥之祭. 若親喪小祥後方遭君喪, 則他時君服除後, 惟行大祥祭也. 然此皆謂適子主祭而居官者. 若庶子居官而行君服, 適子在家, 自依時行親喪之禮."

손녀 및 종부형제의 딸에 대한 복은 수록하지 않았다. 이것이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 본 두주(不錄兄弟女若孫女從父兄弟女, 反錄姊妹子, 恐訛.【11張左】)이다.

③「方相魌頭圖」에는 朱衣玄裳으로 되어 있다. '發引・發引之具' 方相 항목에는 "『주례』에 '4인이다. 곰의 가죽을 쓰고 황금색 눈 4개이며 현색의 상의와 주색의 하상을 입는다.' 하였다.(『周禮』'四人. 掌蒙熊皮, 黃金四目, 玄衣朱裳.')" 라고 한 소주가 달려 있다. 본 두주(玄衣象武, 朱裳象文, 此作朱衣玄裳恐誤.【14張左】)는 도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초간본의 경우 방상 항목은 없지만「방상기두도」를 수록하고 있는데, 주의현상으로 되어 있다. 연산현개간본 이후에는 예외 없이 방상 항목을 수록하면서도 59) 도는 수정되지 않은 채 실려있다. 이를 玄衣朱裳으로 수정한 것은 『사계전서』의「家禮輯覽圖」뿐이다.

④ '襲・襲具'에는 부인의 습의에 관한 按說이 소주에 실려 있고 결론적으로 "女喪에는 圓衫 또는 蒙頭衣 또는 長襖子를 쓴다."고 규정하였다. 두주에서는 "고례에 근거하면 부인의 습에도 심의를 써야 한다.(尤庵曰: 據古禮, 婦人襲亦當用深衣.【6張右1行】)"는 尤菴의 설을 제시하고 있다. ⑤ '小斂・奠具' 盥盆 항목에는 "두 개다. 하나는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이 손을 씻는 것이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집사가 손을 씻는 것이다.(盥盆二. 一有臺, 祝所盥, 無者, 執事所盥.)"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帨巾 항목에는 '두 개(二)'라고만 되어 있다. 두주(盥盆旣有臺, 則帨巾亦當有架. 更詳之.【13張左5行】)는 관분을 축과 집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받침대가 있고 후자는 없는 것으로 세분한다면, 세건의 경우도 축이 사용하는 것에는 걸이(架)가 있고 집사가 사용하는 것은 걸이가 없다는 규정을 『상례비요』의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도(「小斂之圖」)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참고로 『가례』의「小斂圖」는 盥盆의 臺만 그려져 있고 세건의 架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59) 宋能相, 書/答郭孟星」, 『雲坪先生文集』 卷5, 「"方相 ○「備要圖」云: 朱衣玄裳. '發引之具'方相小註云: '玄衣朱裳'者, 何也? 玄衣朱裳, 禮也. 圖本誤."

5.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돈암서원본 계통은 10행23자, 不分卷1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전본으로는 초간본을 포함하여 6종의 異本이 확인된다. ① 初刊本은 3종이다. 분석 결과 Ⓐ(국중본)는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이고 Ⓑ(충남대본)과 Ⓒ(경희대본)은 동일한 판본의 초쇄와 후쇄의 관계로서 Ⓐ(국중본)와는 다른 판본, 즉 초간본을 중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辛未(1631)년 초간본의 중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② (連山縣開刊)본은 ③ (四史庫)본보다 선행본이다. 예컨대, 頭註가 없다는 점, 「豊碑古制圖」를 수록한 점, 옷고름(衣繫)에 대한 설명 내용 등은 (사사고)본이 아닌 초간본과 친연성을 가진다. 아울러 몇 군데 誤記된 부분이 (사사고)본에서는 모두 바로잡혔다는 점 또한 그 근거가 된다. 1650년 연산현령의 요구로 송준길의 교감을 거쳐 1651년 말경에 開刊된 본으로 추정된다. ③ (四史庫)본은 1665년 이전 간행되어 네곳의 史庫에 입고되어 전승된 본이다. 돈암서원본 계통에서는 처음으로 6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다. 두주의 내용은 대체로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예설을 기록한 것이다.

④ 乙酉書院重刊본은 朴建中『喪禮備要補』의 臺本으로 사용된 간본이다.『상례비요보』는 1806년 초고가 완성되고 1838년 교정을 거쳐 완성된 책이므로, 을유서원중간본은 1705년 또는 1765년 간행된 것이다. ⑤ 乙丑遯巖書院重刊본은 현재 돈암서원에 소장된 책판과 일치하는 간본이다. ④에 비하여 5개 많은 12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고, 증가된 두주는 대부분『疑禮問解』와『疑禮問解續』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 중 3개는 경상감영본 계통 가운데 1812년본에 부가된 것과 동일하다. 돈암서원에 소장된 책판이 ⑤라면 ④는 ⑤보다 선행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을축년은 1745년, 1805년, 1865년, 1925년 중 하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1812년 이후인 1865년 또는 1925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⑥ 乙亥濟州鄕校開刊본은 李益泰가 제주목사 재임시절인 1695년에 간행한 것이다. 이익태는 宋時烈의 위판을 橘林書院에 봉안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이 전해진다.

함경감영본 계통은 10행18자, 2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丙午咸鏡監營開刊본은 閔鼎重이 함경감사로 재직할 때인 1666년 간행한 것이고, ② 己巳咸營重刊본은 鄭澔가 鏡城判官으로 재직하던 1689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甲寅吉州牧開刊본은 간행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함경감영본 계통은 본문의 小字를 雙行이 아닌 單行으로 기록하면서 대폭 늘어난 분량을 고려하여 권1과 권2로 분권을 하고 분책을 한 최초의 간본이다. 내용상으로도 다른 계통과는 달리 독자적인 해석을 가한 곳이 발견된다. 예컨대, 圖에서 '尸牀'의 위치를 正寢의 室이 아닌 正寢의 堂으로 해석하여 표시한 것, 다른 본에는 없는 「載纁遣奠之圖」를 수록한 것 등이 그것이다. 초기본으로는 예외적으로 평균 21개의 두주를 부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두주는 본문을 교감하고 교정한 것과 예설을 보완한 것이 대등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평안감영본 계통은 9행21자, 2권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平安監營開刊본은 閔維重이 평안도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1670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成川府開刊본은 간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18세기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안감영본 계통은 상, 하 2권으로 분권을 하되 1책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상권은 '初終'에서 '弔奠賻'까지이고 하권은 '聞喪'에서 '墓祭'까지이다. 이는 함경감영본 계통의 간본이 '初終'에서 '聞喪'까지를 제 1권으로 하고 '治葬'에서 '墓祭'까지를 제 2권으로 구성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상감영본 계통은 함경감영본 계통의 분권 방식을 따르고 있다. 평안감영본 계통은 내용상으로 四史庫본이 아닌 連山縣開刊본과 친연성을 가진 판본이다. 예컨대, 「豊碑古制圖」를 수록한 점, 「妾服圖」의 내용이 동일한 점, 옷고름(衣繫)에 대한 설명이 동일한 점 등이다.

경상감영본 계통은 8행21자, 2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전본으로는 6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간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함경감영본 계통과 마찬가지로 '初終'에서 '聞喪', '治葬'에서 '墓祭'까지로 분권되어 있다. 圖에서 보이는 특징은 어떤 특정한 계통을 따르기보다는 각 계통에 나타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두주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균 79개의

두주가 부가되어 있고, 본문의 글자를 교감한 것과 본문의 오류를 교정한 것 그리고 관련 예설을 보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宋時烈은 1672년 10월 16일 돈암서원의 유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요』의 간행이 끝났다니 사문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건을 보내주시니 감사함을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 밖에 함께 기록한 저의 설이 모두 고례이기는 하지만 잘못 인용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않습니다."[60]라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壬子(1672)년에 돈암서원에서 『상례비요』가 중간되었고 송시열의 설이 두주에 다수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자(1648)년에 돈암서원에서 개간된 사실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두 본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본들과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간행된 것이 확실한 2종을 간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현전 이본

	刊本名	刊年	卷數	行字數	頭註數	備考
①	(庚申初刊)본	1621	不分卷 1冊	10行22字	0개	
❶	(戊子書院開刊)본	1648				실물 미확인
②	(連山縣開刊)본	1651	不分卷 1冊	10行23字	0개	
③	(四史庫)본	1665이전	不分卷 1冊	10行23字	6개	
④	丙午咸鏡監營開刊본	1666	1・2卷 2冊	10行18字	19개	
⑤	平安監營開刊본	1669	上・下卷 1冊	9行21字	1개	
❷	(壬子書院重刊)본	1672				실물 미확인
⑥	甲寅吉州牧開刊본	미상	1・2卷 2冊	10行18字	17개	
⑦	己巳咸營重刊본	1689	1・2卷 2冊	10行18字	21개	
⑧	成川府開刊본	미상	上・下卷 1冊	9行21字	2개	
⑨	乙亥濟州鄕校開刊본	1695	不分卷 1冊	10行23字	8개	
⑩	乙酉書院重刊본	1705[61]	不分卷 1冊	10行23字	7개	

60) 宋時烈, 「答遯巖院儒」[壬子(1672)十月十六日], 『宋子大全』 卷120, "『備要』刊訖, 斯文之幸. 一件之惠, 感戢難容. 只行外兼用鄙說, 雖皆古禮, 莫或有誤引者耶! 是不敢安."

⑪	崇禎再甲子嶺營開刊본	1744	上・下卷 2冊	8行21字	83개	
⑫	崇禎三壬寅嶺營改刊본	1782	上・下卷 2冊	8行21字	72개	
⑬	崇禎四壬申嶺營改刊본	1812	上・下卷 2冊	8行21字	82개	
⑭	崇禎四戊申嶺營改刊본	1848	上・下卷 2冊	8行21字	74개	
⑮	崇禎五戊子嶺營改刊본	1888	上・下卷 2冊	8行21字	79개	
⑯	(在田堂書鋪)본	1913	上・下卷 1冊	8行21字	84개	
⑰	(沙溪全書)본	1923	4卷	10行20字	0개	
⑱	乙丑遯巖書院重刊본	1745 이후	不分卷 1冊	10行23字	12개	

〈표 9〉에 따르면, 무자서원개간본이 간행된 1648년 이후 을해제주향교 개간본이 간행되는 1695년까지는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등에서 최소한 7차례 중간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하게 보급 확산되고, 18~19세기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지며 20세기에는 충청도가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18~19세기 간기가 확실한 경상감영본 계통이 분석에 대거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착시일 수 있다. 책판의 소장처를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표 9〉에 기록된 것이외에도 경기도의 경우 北漢山(太古寺), 충청도의 경우 丹陽, 林川, 忠州, 淸州, 전라도의 경우 石溪書院, 玉果, 全州, 경상도의 경우 義城, 淸道에서 간행된 이본[62]이 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후 18~19세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간행된 이본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1765년도 가능하다.
62) 金香淑, 앞의 글, 2015, 127-128면.

▮ 참고문헌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도서출판 성심, 2014.
金香淑, 『畿湖士林 禮書의 書誌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장동우,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동양철학』 34, 한국동양철학회, 2010.
_____,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111-137면.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5, 한국서지학회, 2013.
_____,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Editions of *Sangryebiyo*

Chang, Dongwoo*

Sangryebiyo is a monumental work that summarizes the research of the first half of the 17th in terms of rituals. Although it is limited to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es, *Sangryebiyo* maintains the system of *Family rituals* as much as possible, and performs work to supplement『Family rituals』based on the theory established by Zhu Xi in his later years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Family rituals*. At the same time, it is a book that has advanc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urtesy of the private sector in *Kukchooryeui* by proceeding with the work of localizing *Family rituals* by reflecting the customs of Joseon. This is because it expands to coming-of-age ceremony and weddings and proceeds with refinement in terms of content without exception.

This achievement of *Sangryebiyo* was supported by national dissemination and spread, but only one specialized study on it. In addition, since the number of different editions targeted for analysis was not large, classification based on morphological matters was insufficient to show the wide spread and dissemination of *Sangryebiyo.*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8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10 editions were added, and 18 different edition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ased on publications to try to show the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Sangryebiyo* closer to reality.

Keywords: *Sangryebiyo* (喪禮備要), Donam Seowon Branch (遯巖書院本 系統), Pyongangamyeong Branch (平安監營本 系統), Hamgyeong Gamyeong Branch (咸鏡監營本 系統), Gyeongsang Gyeongyeong Branch (慶尙監營本 系統).

접수일: 2023.06.29.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Humanities, Daejin Univ.